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되는 첨단·혁신기술을 말한다.

1. 동물이나 식물, 균류, 미생물 등 세포 배양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하게 제조·판매하는 세포배양 식품 제조
2.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하게 제조·판매하는 식물기반 식품 제조
3. 개인의 건강, 선호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식품 또는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4.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가열 등 단순 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간편식품 제조
5. 삼차원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조·판매하는 삼차원프린팅 식품 제조
6. 식품 제조 과정에 센서, 자동화 장비, 로봇 등을 활용하여 공정의 효율성과 작업의 편리성을 증진하는 서비스인 식품 스마트 제조
7. 농축산식품 유통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식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플랫폼인 식품 스마트 유통
8. 외식업에 로봇·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의 접근성, 조리의 효율성 등을 높여주는 외식 혁신 서비스
9.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농축산부산물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식품인 새활용 식품 제조

10.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 저감을 위해 친환경적 요소를 적용한 친환경 식품 포장재 제조

11.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에 이용되는 첨단·혁신기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연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푸드테크산업 현황
2. 푸드테크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및 그 수요·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사업자의 매출 현황 및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사항)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명
2. 대표자명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사무소의 소재지
5. 신고업종 및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
6.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7.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수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보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7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명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사무소의 소재지
5. 신고업종
6.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

② 푸드테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7조 제4항에 따라 발급된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 푸드테크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9조(신고의 갱신)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푸드테크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5. 푸드테크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 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푸드테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할 것

나. 푸드테크산업 육성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것

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식품축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규제정합성
3.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4.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불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불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수행자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제출의 요청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사업자, 전담기관에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사
2.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3.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갱신신고의 접수 및 확인

4. 법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5. 법 제9조에 따른 창업 및 자금 지원
6.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
7.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8.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9. 법 제14조 각 호의 사업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
 2. 전담기관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5.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 3)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2호			
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공익 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4호	지정 취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0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20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 제1항제2호	30	50	100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20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20조 제1항제4호	30	50	100